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9호
2.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
3. 발의일자 : 2017. 8. 14.
4. 회부일자 : 2017. 8. 17.

II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102호, 2017. 6. 13. 일부개정, 2017. 6.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조제2항)
2. 학부모위원 및 학급별 대표,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4. 상위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맞추어 ‘유치원규정’을 ‘유치원규칙’으로 수정함.
(안 제10조제1항제1호)
5. 보고의 주체와 보고받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 규정함.(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8. 18. ~ 8. 25.) : 제출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8월 14일 박마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039호로 발의되어 2017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입법의 체계성, 통일성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13일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¹⁾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규범의 통일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개정조문별 검토

1) 안 제4조(위원의 선출 등)

1)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선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단일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긴 조문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에2) 따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과 입법의 통일성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2) 안 제4조의2(위원의 자격) 신설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위원 자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가3)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려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⑥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는 것은 규범의 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12도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유아교육과-5757,2017.8.24.).

다만 지난 8월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바, 국회의 안건 처리상황을 지켜본 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⁵⁾

현 행	개정법률안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신설></p>	<p>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④ (생략)</p>	<p>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5) 보다 구체적인 법률개정 사항은 [붙임] 의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그 밖의 개정사항

- 그 밖에 동 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안 제6조, 제18조,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만들기」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거나 긴 조문을 간결하게 바꾸는 것인바, 입법의 체계적합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u>유아교육진흥원</u>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 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유아교육진흥원</u>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유아교육원) ①----- ----- ----- ----- <u>유아교육원</u>----- -----.</p> <p>②----- <u>유아교육원</u>----- -----.</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u>유치원운영위원회</u>를 둘 수 있다. 다만, 「<u>교육공무원법</u>」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u>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u>은 <u>유치원운영위원회</u>를 두어야 한다.</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 <u>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u>은 <u>유치원운영위원회</u>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③·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유치원운영위원회의</u>의 <u>위원</u>이 될 수 없다.</p> <p>④ <u>유치원운영위원회의</u>의 <u>위원</u>이 「<u>국가공무원법</u>」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u>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u>국립·공립 유치원의 원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유치원운영위원회의</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1. ~ 10. (생략)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

1. ~ 10. (현행과 같음)

② 사립유치원의 원장-----
----- 관하여 -----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해당 사유 및 처리 사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면 유치원의 교육활동 또는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 사립유치원의 원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

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2호, 2017.3.21., 일부개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1호, 2017.6.20., 일부개정]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

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⑥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